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·의결	
안건 번호	제2025-217-352호
안 건 명	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피 심 인	법무사 사무소 대표자
의결연월일	2025. 9. 10.

## 주 문

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가 포함된 출력물을 처리하면서 비식별 (마스킹) 처리 등 안전조치 없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노출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.

## 이 유

피심인은 '갈산1구역' 내에 이주관련(이주비신청, 기존건축물의 철거, 명도소송·점유이전금지가처분), 이주비 근저당권 설정 관련, 손해배상소송 위임 등 기타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 법무사무소로 '24. 1. 8. 조합원에게 근저당권 설정시 발생하는 채권 할인금액을 안내하면서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미지사진 파일(2장, 주민등록번호 48건)을 잘못 첨부('24.1.8. 12:58~)한 사실이 있다.

이후, 해당 정보를 수신한 조합원(74명)에게 타인(다른 조합원)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미지 사진을 즉시 삭제하도록 반복 요청하였고,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고 경위 안내 및 유출 사실을 통지('24.1.8. 14:00~, 유선·문자) 하고, 개인정보 포 털에 자진 신고('24.1.9. 10:27)한 사실이 있다.

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(법률 제19234호)」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에 해당되나 「개인정보 보호법(법률 제19234호)」제64조의2, 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대한 과징금 부과기준(지침 제2023-3호)」제4조제2항제1호·제2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, 「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(고시 제2023-9호)」제21조에 따라 경고 처분한다.

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2025년 9월 10일

위원장 김진환

위 원 김일환

위 원 김휘강